Feature articles ▮ Al 국내 유입 철저 봉쇄

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내역

농림부

기본방향

- □ 국경검역 · 국내대책은 2005/2006 특별방역대책 기조를 유지
 - 2006.11~2007.2월까지를 「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」으로 설정, 전국 방역기관별 상황실 운영 등 특별방역 추진
- □ 국내 비발생 상황 및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의 부작용(축산물 소비기피)을 고려하여 홍보는 축산 농가 위주로 실시

국경검역

수입 가금육 검사 및 공항·항만 검색·밀수단 속 강화

- □ 수입 가금육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
- 열처리된 가금육 수입이 허용된 발생국가 (중국·태국)에 대한 검역 강화
 - 승인된 수출작업장(중국 61개소, 태국 45개소)별로 최초 수입시 3회 연속 검사, 이후 10회마다 검사(검사기간 30일 이상 소요)
- 모든 가금육 수입국을 대상으로 수입 가금 육 모니터링 실시
- 수입건의 20% 비율로 바이러스 검사 실시 (검사비율은 역학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 로 조정)

- ※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국에 대한 규제적 차원의 정밀검사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모니터링 차워의 검사를 실시
- □ 공항·항만 검역관 및 검역탐지견 증원배치를 통한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축산물 반입금지 홍보 강화
- □ 밀반입되는 애완조류에 대한 밀수단속 강화
- 중국·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밀수입되는 애 완조류(앵무새 등)에 대한 해양경찰청·관 세청 등의 밀수단속 협조 필요
 - 밀수 사례 적발시 동물검역관에게 인계토 록 조치
 - ※ 2005. 9월 영국의 검역시설에서는 대만 산 수입 애완조류에서 H5N1 검출

11

국내방역

유입경로별 예찰활동 강화 및 야생조류와 접촉 차단

- □ 주요 유입경로(철새→텃새→닭·오리)에 대한 예찰 확대
- 조기색출을 위해 철새(주요유입원)→텃새 (중간매개체)→오리(잠복감염원) 대한 예찰 활동 강화
 - 철새 분변검사(철새도래지 31개소 2,480점), 텃새 분변검사(철새도래지·공원지역720점), 오리 혈청검사(900농가 20,000건)
- 파주·철원·고성 민통선지역의 분변(300 점) 일제조사
- 집중관리대상지역(21개소)의 닭·오리 임상 관참 강화
 - 시·군 주관으로 지역축협, 방역본부, 양 계·계육·오리협회 시·군지부 등과 농 가를 분담하여 3일 간격으로 전 농가 전화 확인
 - 기타지역은 시·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(최소 7일 간격)
 - ※ 집중관리대상지역 : 울산(울주), 경기(이 천·양주/안성·평택·포천·고양·김 포·용인·화성), 충북(음성·진천/청 원), 충남(천안·아산/연기), 전남(나주/ 영암·함평), 경북(경주), 경남(양산)

□ 방사 오리 · 토종닭 방역관리 지도

- 철새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사육장 사육 또는 사료저장소 등 그물망 설치 등을 지도
- 필요시 야외사육 토종닭 등에 대하여 모니 터링 분변검사 실시(신속 진단킷트 이용)

교육・홍보



- □ 경각심 고취 및 야생조류와 사육기금의 차 단조치 홍보
- 철새·텃새와 가금의 접촉 방지를 위한 조 치등홍보
 - i) 축사·사료창고·분뇨처리장내 야생조 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, 그물망 설치,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
 - ii) 가금 사육농가의 철새도래지 접근 자제 및 부득이 방문한 때에는 신발 세척·소 독후 귀가토록 홍보
 - iii) 축산농가의 중국·태국·베트남·인도 네시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 행 자제 홍보
 - ※ 방역본부에서 홍보리후렛 제작·배포 (10.31까지) 및 전문지 홍보(11~2월) 추 진(농림부와 사전협의후 추진)
- 문자서비스(SMS) 및 ARS 서비스를 이용한 정기적 농가 홍보
- 시·도(시·군)별 자체 홍보 및 검역원의 일괄 홍보 실시

Feature articles ■ Al 국내 유입 철저 봉쇄

- 를 위한 닭 · 오리 사육농가 연락처를 파 악하여 검역원에 제출(10, 31까지)
- 양계·오리농가에 특별대책 홍보물 배포(검 역원 10.31까지)
- 휴대폰 액정클리너(10,000개), 냉장고 부착 용 마그네틱(10.000개)
- 농협중앙회는 농림부와 별도로 자체 홍보계 획을 수립하여 특별방역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 실시

국제협력

- □ ASEAN 국가 대상 AI 진단기술 훈련 및 진 단킷트 지원
- ASEAN 10개국에 AI 진단킷트(총 6.000 개) 지원(11월말)
- AI 진단기법 기술훈련(회원국별 2명, 총 20 명) 실시(11월말)
 - ※ ASEAN 회원국: 인도네시아, 태국, 말 레이시아, 필리핀, 싱가포르, 브루나이, 라오스. 미얀마. 베트남. 캄보디아

□ AI 방역 국제기금 공여

- O AI방역 국제기금(World Bank 주관) 1백만 불 공여 계획(2007년)
 - 외교통상부·보건복지부·농림부에서 각 1/3씩 분담(국제적으로 총 19억불 모금 계획)

※ 시·도(시·군)별로 SMS 및 ARS 홍보 ※ 공여금의 사용분야는 기금 공여시기 (2007년도)에 맞추어 World Bank와 협 의를 거쳐 결정 예정

국내 발생시 긴급방역조치 절차

방역실시요령(농림부고시. 2004.5). 긴급행동 지침(SOP, 2004.6) 및 NSC 위기관리매뉴얼 (2004.9)에 따라 방역조치 및 부처간 협조

Step1 발생지를 중심으로 이동제한지역을 설정

- □ 위험지역(3km) 및 경계지역(3~10km)을 설정하 여 닭 · 오리 및 관련물품 이동제한(30일 이상)
- □ 주요도로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국방 부·경찰청 등의 지원을 받아 이동통제



11

Step2 감염원 제거를 위한 살처분 및 소독 실시

- □ 발생농장의 가금류 등을 신속히 살처분·폐 기(CO₂ 가스 등을 이용해 안락사 후 환경오 역 및 전파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매몰)
- 반경 500m·3km·10km 이내 농장 및 역학 적 관련농장의 경우는 검역원장의 자문을 받아 결정
 - ※ AI 백신은 현 단계에서 사용계획은 없으며, 전국적 확산에 대비한 대량생산체계는기 구축(2004.9, 국내 제조업체 5개소)
- □ 해당지역 축사, 가축,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

[살처분 인력 확보 및 인체감염 방지조치]

- 지자체 방역인력(공무원, 공수의 등), 방역 본부 방역요원 및 계육관련업계의 닭 출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인력 확보
- 살처분 현장투입 인력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(PPE) 지급(지자체) 및 백신·항바이러스제 투여(질병관리본부 협조)
 - ※ 농림부에서는 지자체 방역인력에 대한 방역복 비축 지원(40천벌, 400백만원)

Step3 이동제한지역 사육 가금에 대한 확인 검사 실시

- □ 마지막 발생농장의 감수성 가축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동제한지역 내의 닭·오리에 대한 확인검사 실시
- 임상검사, 혈청검사 및 분변검사를 통해 이 상 유무 확인

Step4 이동제한 해제 및 가축 재입식(restocking)

□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고 분변검사 및 입식시험을 거쳐 이상이 없음 을 확인한 후 가축 재입식 허용 ❖<

분변을 매몰 · 소독할 경우 살처분 후 30일 경과 ↓ 분변검사 (10일) ↓ 3주간 입식시험

(축사당 중추 5수 이상)